

대구대학교와 (재)포항지능로봇연구소의 업무협력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재단법인 포항지능로봇연구소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써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능로봇 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 및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 1 조(목적)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재단법인 포항지능로봇연구소 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)가 재활의료 및 지능로봇 활용산업 육성분야를 위한 연구, 교육, 정보교류, 장비와 시설의 상호활용과 같은 공동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이행) ① "양 기관"은 당해 기관의 제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②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"양 기관"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(공동사업수행) ① "양 기관"은 재활의료와 지능로봇 활용산업 육성분야 발전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화연구 및 상호 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.
② "양 기관"은 정부, 지자체 또는 각종 정부기관 지원사업의 공동 발굴 및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등 상호 협력한다.
③ "양 기관"은 상대기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 또는 사업수행을 제안할 수 있다.

제4조(인력교류) ① "양 기관"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상대기관의 소속 인력을 겸직 또는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.
② 인력활용에 대한 해당 경비는 "양 기관"의 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5조(정보교류) ① “양 기관”은 학술회의, 교육,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② “양 기관”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업무상 노하우에 대해 협조할 수 있으며,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장비 및 시설의 공동활용) ① “양 기관”은 상대기관의 연구장비 및 시설,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장비 또는 시설사용, 시험생산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처리한다.

제7조(효력 및 협약기간) 이 협약서의 효력은 “양 기관”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폐기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, “양 기관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8년 5월 13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이 용 두

이 용 두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



소장 염 영 일

염 영 일

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1